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주전송장치	(전화번호:)

사업 개요	운용채널	방송용: 기 타:
		방송구역
		전송망 이용방법
		망용량

방송개시 예정일

「방송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종합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중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설치계획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 본	종합유선방송사업: 2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 100,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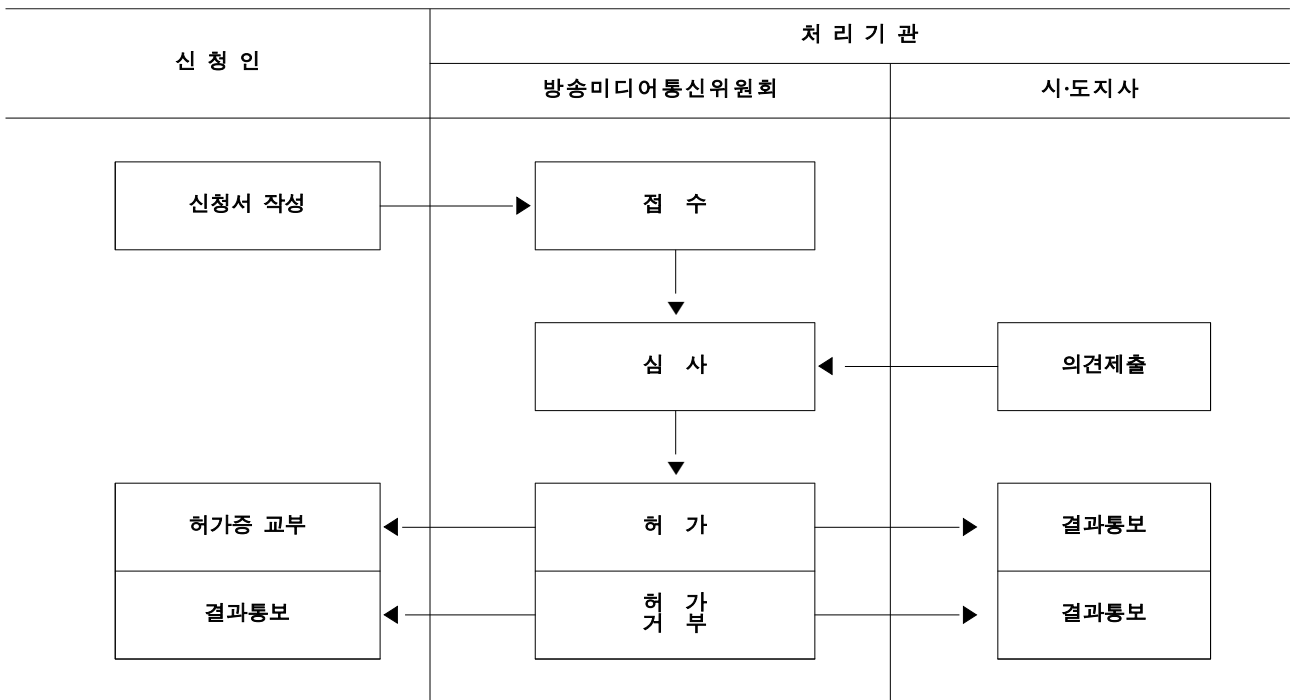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의견 제출 및 결과 통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